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861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내 쌀가공식품(쌀 함량 30%이상)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기구 의원안)	2

I. 개요

1.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86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6.

(3) 회 부 일 : 2024. 11.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등 심각한 쌀 수급 불균형에 직면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쌀 가공식품의 판매가격을 낮추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에 외국산 쌀이 함유되지 아니한 쌀가공식품 중 쌀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II. 검토의견

1. 국내 쌀가공식품(쌀 함량 30%이상)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기구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의 면제(제106조제1항) ☐ <신 설>	☐ 면제대상에 국내 쌀가공식품 추가 ☐ 쌀가공업자가 제조한 쌀가공품 중 쌀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식품(국내산이 아닌 쌀이 함유된 식품은 제외)
	☐ 부 칙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여기구의원안 2024. 11. 26. 발의(의안번호 5861)

☐ 개정안은 쌀가공업자가 제조한 쌀가공품 중 쌀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식품(국내산이 아닌 쌀이 함유된 식품은 제외)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본래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므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26조¹⁾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반 조항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20. (생략)

조제1항에서는 서민생활의 지원 및 농어촌 지원 등의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상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²⁾.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쌀 소비 감소와 쌀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통계청의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³⁾에 따르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4.6g으로 전년 대비 0.6%(0.9g) 감소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저치에 해당하는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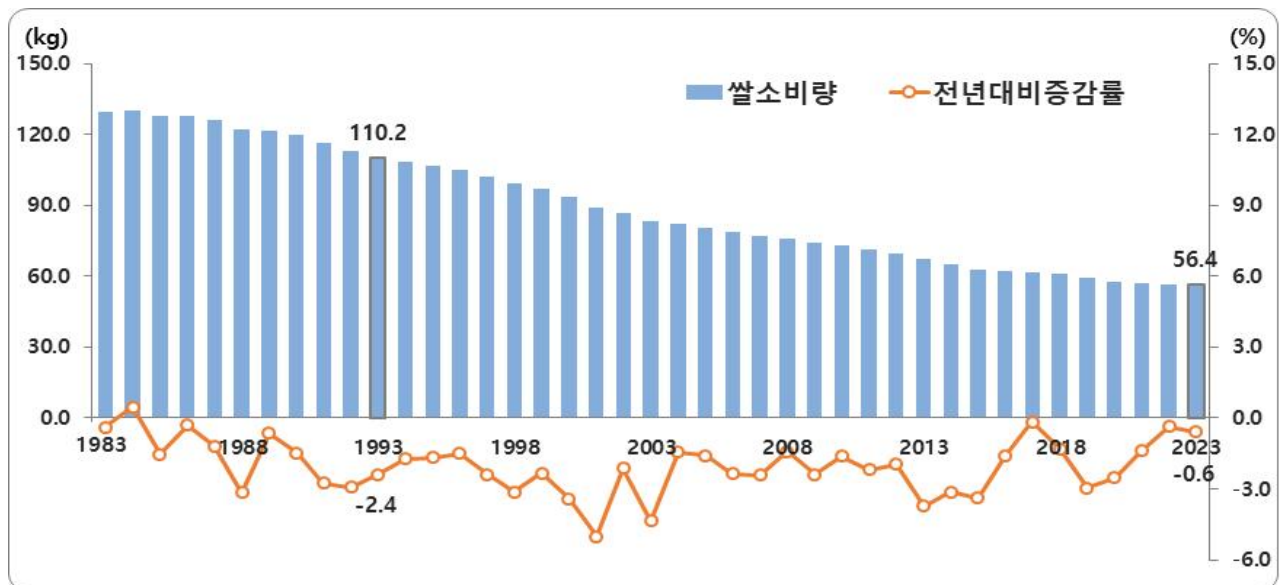
[연도별 1인당 하루 쌀 소비량]

(단위: g)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비량	178.2	172.4	169.6	169.3	167.3	162.1	158.0	155.8	155.5	154.6

- 또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대비 0.6%(0.3kg) 감소하였으며 93년 소비량(110.2kg) 대비 절반 수준에 해당함.

[연도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1983-2023)]



2) 윤충식·장태호,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 2023, p.1395.

3) 통계청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2024.1.26.

□ 이에 개정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쌀가공품⁴⁾ 중 쌀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식품(다만, 국내산이 아닌 쌀이 함유된 식품은 제외)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음.

첫째, 쌀가공업자가 제조한 쌀가공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은 쌀 가공산업⁵⁾의 성장과 국내 쌀 소비 확대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목표는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산 쌀의 활용도를 높이고 쌀 가공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⁶⁾

둘째,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쌀가공품의 판매가격이 인하되면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

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 식품 소비 유행을 고려한 4대 시장전략(간편, 건강, 케이-푸드(K-food), 뉴트로)을 토대로 10대 유망품목을 쌀가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①간편 가공밥·죽 ②도시락·김밥 ③떡볶이 ④냉동떡 ⑤쌀 증류주 ⑥쌀 음료 ⑦쌀국수 ⑧혼합면 ⑨쌀빵 ⑩쌀과자

6) 「참고자료」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2024.1.2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회를 제공받게 되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시키고, 쌀가공식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쌀가공업자가 제조한 쌀가공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므로 쌀가공식품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정책 수단으로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즉, 쌀가공업자는 쌀가공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만, 쌀가공업자가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나 기계 등을 구매할 때 본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결국 이 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쌀가공품의 판매가격을 낮추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둘째, 쌀가공품을 면제할 경우 유사한 농산물인 밀·보리·옥수수 등과 기타 축산물·수산물 가공품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면세 요구 확대 등으로 과세 대상 품목이 줄어들어 결국 세수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

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초생활 필수재화·용역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기초생활 필수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쌀가공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 참고로,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법률이 개정될 경우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부칙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47

참고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미래 유망분야 육성,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견인하고 쌀 소비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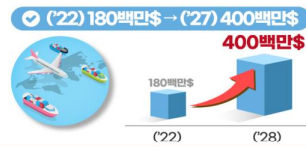
시장 다각화를 통해 국내 시장 규모를 2배 이상 확대



가공용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 도모



수출 지원을 강화해 수출규모를 대폭 확대



쌀가공산업 미래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마련

쌀가공산업 유망분야 집중 육성

4대 전략

- Simple&Easy : 쌀 간편식품 시장을 확대
- Healthy : 글루텐프리·비건 등 건강식품 시장 육성
- Global : K-Food 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
- New-tro : 전통에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제품 발굴

10대 품목

- ① 간편 가공밥·죽
- ② 도시락·김밥
- ③ 떡볶이
- ④ 냉동떡
- ⑤ 쌀 증류주
- ⑥ 쌀 음료
- ⑦ 쌀국수
- ⑧ 혼합면
- ⑨ 쌀빵
- ⑩ 쌀과자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



- 재배면적 확대(42천ha)
- 보급종 공급 확대
- * ('24)600 → ('26)2,526톤



- 대규모 제분 시스템 구축
- * 제분기술 R&D 및 제분비 지원
- 품질 관리



- 식품·유통업계 연계 신제품 개발 지원
- * ('23)15 → ('27)100개
- 외식업계 연계 대량소비처 발굴

국내·외 수요를 적극 확대하여 쌀 소비기반을 확충

글루텐프리 인증기업 육성



- 글루텐프리 인증기업 육성
- * 국내인증('23)8 → ('28)100개
- * 해외인증('23)3 → ('28)30개
- 글루텐프리 시장 정보제공, 국내 제품 판촉 지원

K-Food 대표 수출품목 육성



- 수출 국가 유망품목별 전략 마련
- 해외 바이어 매칭 기회 확대
- 한류문화 연계 홍보 강화
- 맞춤형 해외 시장정보 제공

소비자 구매 접점 경험 증대



- 어린이·청년 등 미래세대 대상 쌀 소비 교육·홍보 사업 확대
- 온·오프라인 유통 확충

산업 성장기반을 튼튼히 조성하여 경쟁력을 제고

가공용 쌀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



- 업체의 정부양곡 원료의 수급 예측가능성 제고
- * 5개년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등
- 가공용쌀 품질관리 체계 강화

원료곡의 민간조달 활성화



- 가공용 쌀 장기 계약재배 지원
- 한국형 인디카 쌀 재배단지 조성 추진
- 제품 용도별 맞춤형 품종 개발

시설·경영개선 지원



- 쌀가공육성지원자금 확대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마련

산업 혁신기술 R&D 체계 강화



- 10대 핵심기술 R&D 지원
-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



- 시장 정보제공 확대
- 현황 조사의 국가승인통계 등록 추진